

[서식 예] 이사취임 숭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00. O.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과 같은 날짜로 소외 김□□을 위 학교법인의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법률상 학교법인 ○○학원의 이사로서 취임하여 그 직무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, 19○○. ○. 발생한 교내 교수의 부당해직결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분규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정권고를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,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9○○. ○. ○.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- 2. 법률상 학교법인에게 학내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사장 등의 취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시정요구



한지 8일만에 해임조치를 한 위 피고의 행위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며, 또한 원고가 소외 김□□ 총장이 퇴임한 뒤 신임총장과 형식적인 종합시정방 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정상화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피고의 해임사유도 인정 근거가 없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3.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○○○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	1통
1. 행정처분공문	1통
1. 정관	1통
1. 소장부본	1통
1. 납부서	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 ·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
불복방법 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